

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 차단 정책의 주요 내용

(주)케이원자산운용

2026.07.24

(주)케이원자산운용은 『지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5조제4항제3호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제50조제3항제3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1. 회사는 이해상충방지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한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1)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대한 정보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단,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

- ①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 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②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③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 ⑤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

3) 자본시장법 상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단, 다음 각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

- ①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 ②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한 정보
- ③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2. 회사는 1-1) 미공개중요정보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회사의 금융투자업 등 업무와 관련 있는 법인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여부를 판단합니다.

- 1)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 2)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 3)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 4)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변경
- 5)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 6)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 7) 경영 · 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
- 8)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의 공시 또는 공표
- 9)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 · 해임 결정
- 10)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 11)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 12) 회사의 판단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한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3. 회사는 다음과 같이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을 정하고 있습니다.

1) 회사는 업무상 "1 과 2" 각 항목에서 정하는 정보를 접하는 본부 또는 팀을 정보교류차단의 대상이 되는 부문으로 설정하며, 아래 해당본부 또는 팀의 임직원은 정보교류차단과 관련한 법규와 사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고유자산 운용부문
- ② 고객자산 운용부문
- ③ 고객자산 관리부문
- ④ 기타 회사에서 정보교류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부문

4. 회사는 정보교류통제 담당조직을 설치, 운영합니다

- 1) 정보교류의 차단 및 예외적 교류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정책이나 지침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컴플라이언스 팀, 책임자로 준법감시인을 지정한다.
- 2) 준법감시인과 컴플라이언스 팀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지정, 정보교류차단 부문의 설정 및 부문별 책임자 지정, 정보교류차단 정책 또는 지침의 제안, 관련 교육 등을 수행한다.

5. 회사의 정보교류차단 방법과 예외적 교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 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에는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에 상관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 없이 정보교류통제 담당조직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임직원은 습득한 정보의 범위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⑥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 상시적 정보교류 차단

- ①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 사무공간의 분리
 - ㉡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

- ㉔ 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무형의 정보차단장치의 설치·운영

3) 예외적 교류의 방법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 ㉑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 ㉒ 해당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의 사전 승인(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 ㉓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 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 ㉕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 ㉖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금융투자업 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유지, 관리할 것

6. 회사는 다음과 같이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목록 지정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1)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목록 지정

회사는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된 거래주의 상품목록에 대한 상시 감시와 조치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은 거래주의 상품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 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 회사와 임직원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거래제한 상품목록으로 지정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 제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은 거래제한 상품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 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

7. 회사는 이해상충 우려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1) 이해상충 우려가 발생할 경우 고객의 이익이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하고,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2) 이해상충 문제의 차단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 간 또는 고객과 고객 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거래주의 목록으로 등재, 관리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기타 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 차단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 및 담당 임원

①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 컴플라이언스팀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별 책임자: 운용본부장, 고유자산운용팀장, 경영관리본부장

2)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보존, 유지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및 이해상충관리 정책의 주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①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 적용되는 사항
- ② 모든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
-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부당이용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